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배포일자	2022년 8월 19일(금) 총 3매	
담당 부서 청년정책담당관	담당자	• 청년지원팀장 김은희 ☎440-2886 • 담당자 박효준 ☎440-2906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
최대 월 20만 원, 240만 원까지
- 이달 22일부터 신청, 부모와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대상 -
-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줄이기 위해 -

인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월세 부담이 한결 가벼워지게 됐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나이기준을 5세를 더 연장해 만 19~39세까지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 총 24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부모님과 따로 인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무주택자 청년 독립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지원된다.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며,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 2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및 전국 지자체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말부터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실제 지원은 11월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해 신청월부터 소급해 지급된다. 만약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으로 전출,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 계약서 변경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 19세~34세는 복지포털 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천시가 추가로 5세 더 확대 지원하는 만 35세~39세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동구(주민자치과)와 부평구(일자리창출과)에 거주하는 청년은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를 받는다.

신중은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어려운 경제난 속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www.incheon.go.kr/youth)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 및 시 청년정책담당관(☎032-440-2906)으로 문의하면 된다.

- 붙임 1. 청년월세 사업 안내
- 2. 청년월세 홍보용 포스터

붙임1 **사업 안내(www.incheon.go.kr/youth)**

인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사업소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기간	2022. ~ 2024.
○지원대상	인천시 부모님과 별도 거주 만 19세 ~ 39세이하 무주택 청년 임차인
○지원규모	6,000명
○지원내용	○ 1인당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회 월세(실제납부액) 지원(생애 1회)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조건	○ 소득·자산 기준 - 원가구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총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독립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총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월세기준 :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이면 지원가능 ○ 자가진단서비스 : 복지포털(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청년월세지원 *하단 <사업안내> 클릭
○지원제외기준	○ 부모(원가구)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소득, 자산, 월세기준 초과자, ○ 정부 등의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행복주택, 전세 임대주택, 사회주택, 매입임대사업주택 등)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지원사업 기수해자 등 * 신청 전, 복지포털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 사전 진단 실시 추천
○신청기간	2022.8.22. ~ 2023.8.21. (1년간)
○신청방법	○ 만 19세 ~ 34세 : 복지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 만 35세 ~ 39세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 (공통사항) 단, 동구(주민자치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만 접수

붙임2 **홍보용 포스터**




인전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인천시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세~39세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월세를 지원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포털(www.incheon.go.kr/youth) 참고



신청기간 2022. 8. 22. ~ 2023. 8. 21.
문의 : 미추홀콜센터(032-120), LH콜센터(1600-0777),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